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
의왕시 공고 제2025-1408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20일

의왕시장

1. 허가구역 조정지역

대상지역	비 고
의왕시 전역	아파트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

○ 허가대상 용도: 아파트

4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㎡ 초과
	임 야	1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㎡ 초과

5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

* 토지e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